

**식품의약품안전청 명령**

불기 2561년(서기 2018년) 제422호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른 조사의 배정에 관하여(제2호)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른 조사의 배정에 관한 불기 2558년(서기 2016년) 4월 20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명령 제161호와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의 신청, 신청 접수증 발급, 신청 접수증 갱신, 신청 접수증 수정에 관한 불기 2561년(서기 2018년) 8월 22일자 공중보건부의 공고에 따라 조사에 관한 배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90조 및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른 조사 기준에 관한 불기 2559년(서기 2016년) 화장품 위원회의 규정 제4조의 권한과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다음과 같은 명령을 발표한다.

제1조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른 조사의 배정에 관한 2016년 4월 20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명령 제161/2559호에 제1조(4)로 다음을 추가한다.

“(4)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 사전-마케팅 감독 그룹의 약사 또는 그 수준 이상의 전문가들은 제15조 4항에 따라 왕국 전역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주장되거나, 발생했다고 믿어지는 위법 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

제2조 본 명령에 언급된 사항 외의 기타 사항은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른 불기 2559년(서기 2016년) 4월 20일자 조사의 배정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청 명령을 따라야 한다.

본 명령은 즉시 시행한다.

불기 2561년(서기 2018년) 8월 29일 명령



완차이 사티야우티퐁

식품의약품안전청장